

부산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692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6924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가단1228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해

담당변호사 문주호

변론종결 2022. 7. 20.

판결선고 2022. 8. 31.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가단1228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1)에 관하여 한 2020. 3. 16.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8,222,2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222,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을 제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D이 2020년경 원고에게 제1심판결 기재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상각분납을 신청하였다가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D의 시효이익 포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20.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상각분납을 신청하여 승인이 났는데, 그 상각분납약정 내용은 D이 2020. 9. 25.까지 38,200,000원을 선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 57,803,709원 중 나머지 금액인 19,603,709원을 감면해주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사실, D이 선납금액을 입금하지 못하여 위 약정은 실효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므로 포기자 외의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대법원 1991. 1. 29. 89다카1114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 소멸한 후 제1심판결 기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그 이후 설사 D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그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D의 소멸시효이익 포기를 이유로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명, 판사 정일예, 판사 서호원

별지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D의 지분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단순 누락으로 보인다.